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(2018년~2020년)

국가 배출권 할당계획(안)

2017. 12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····· 1

Ⅱ.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 ····· 6

Ⅲ. 1단계 배출권 할당 ····· 7

Ⅳ. 2단계 배출권 할당 ····· 13

Ⅴ. 시장 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할당 ····· 16

Ⅵ.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····· 17

Ⅰ.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

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념

□ (계획명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(이하 "할당계획")

□ (목적 및 의의)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

□ (근거)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) 제5조

□ (계획기간) 제2차 계획기간 2018.1.1.부터 2020.12.31.까지(법 부칙 제2조)

□ (주요내용)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 부문·업종, 배출권 총수량, 업종별 할당량, 업체별 할당기준, 배출권 예비분, 상쇄기준 등(법 제5조)

🗁 배출권거래제 개념

□ (개념) 할당대상업체별로 **배출권**을 **할당**하고 그 범위내에서 **온실가스**를 **배출**하되, 여분·부족분은 **타 업체와 거래 허용**

○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감안하여 **직접 감축활동**을 하거나 **시장**에서 **배출권 매입 가능**

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 수량 개념

가. 배출허용총량

□ 법 제5조제1항에 의거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전체의 **온실가스 배출 총 허용량**

나. 배출권 총 수량

□ **(개념)**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 또는 보유하는 **배출권 전체 수량**

○ 다만, 상쇄배출권 또는 해외 유입 배출권은 총 수량에서 제외

□ **(구성)**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에 할당되는 **'배출권 사전할당량'**과 정부가 보유하는 **'예비분'**의 합

배출권 총수량 = 배출권 사전할당량 + 예비분

○ 사전할당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하고, 예비분 일부*는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

* 시장안정화 예비분 등은 제외

□ **(배출허용총량과의 관계)** 배출허용총량을 할당·거래·제출을 위한 단위로 환산*하면 '배출권 총수량'에 대응

*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시행령(이하 "영") 제23조 제1항에 따라 1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(톤CO_2-eq) 을 1 배출권으로 환산

○ 다만, 예비분 일부는 배출허용총량과 별도로 산정함에 따라, "배출허용총량"과 "배출권 총수량"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음

3 업체별 배출권 할당 체계

□ (개념) '업체별 배출권 할당(allocation)'은 **배출허용총량**에 따라 정해진 계획기간 중 배출권을 **할당대상업체 단위로 배분**

□ (체계) 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요건에 따라 사전할당, 추가할당 등으로 분류

○ (**사전할당**)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의 **기존 시설**을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(법 제12조)

○ (**추가할당**) 계획기간 중 **할당계획 변경 시**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**시설 신·증설 시** 배출권 할당(법 제16조)

○ (**할당취소**) 할당계획 변경, 할당대상업체가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, 전체 시설 폐쇄, 할당받은 시설이 가동 정지된 경우 등에 旣 할당한 배출권 취소(법 제17조)

□ (**최소 산정단위**) 할당량 산정 및 관리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내 **온실가스 배출시설**

○ 할당대상업체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'16년도 명세서*에 산정·보고·검증된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

*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"기본법")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명세서

○ 다만, 소량배출사업장(3,000 톤CO_2-eq 미만)은 사업장 단위로, 소규모 배출시설(100 톤CO_2-eq 미만)은 시설군 단위로 관리 가능

[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]

<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**'과거배출량 기반 할당'**과 **'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'**으로 구분(영 제12조제1항제3호) >

◇ **(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)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**을 근거로 배출권 할당(GF : grandfathering)

○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적정 배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배출수준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, 상대적으로 **적용이 용이**

◇ **(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)** 제품 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**설비효율성**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(BM : benchmark)

○ 업체별 설비 효율성 차이를 고려한 **BM계수***를 사용하여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

* 제품 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실적·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 산정한 값

❖ GF 할당방식 적용 업체별 할당량 산정 기본식 ❖

이행연도별 할당량(GF) = ∑ ①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x ② 조정계수

❖ BM 할당방식 적용 업체별 할당량 산정 기본식 ❖

이행연도별 할당량(BM) = ∑ [① BM방식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+ ② GF방식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] × ③ 조정계수

*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,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」제9조 및 제11조, 별표1

[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, 할당 대상 온실가스 배출행위]

◇ **할당대상업체**(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)

1. 의무적 할당대상업체

①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**125,000**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(톤CO_2-eq) 이상인 **업체**

②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**25,000**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(톤CO_2-eq) 이상인 **사업장**을 가진 업체

③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·변경·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①항 또는 ②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 (신규진입자)

2. 자발적 참여업체

○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나,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·검증하여 1회 이상 보고한 업체

◇ **할당 대상 온실가스**(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3조제1항)

① 이산화탄소(CO_2), ② 메탄(CH_4), ③ 아산화질소(N_2O),
④ 수소불화탄소(HFCs), ⑤ 과불화탄소(PFCs), ⑥ 육불화황(SF_6)

◇ **할당 대상 배출행위**(법 제2조제2호 및 기본법 제2조제10호)

1. **직접배출** :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·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것

2. **간접배출** : 외부로부터 공급된 **전기 또는 열을 사용**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

Ⅱ.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

1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단계적 수립 원칙

○ 정부 환경·에너지 정책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**배출권거래제와 여타 환경·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** 제고

○ 제2차 계획기간 시작 전 제1차 이행연도('18년) 배출권 할당을 완료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**불확실성 완화**

2 1단계 : '18년 배출권 우선 할당('17.12월)

○ 할당대상업체의 '14~'16년 기준 **예상 온실가스 배출량,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*** 등 고려

* 배출권거래제 전체 제1차 계획기간 "각 년도 사전할당량 – 할당취소량 + 추가할당량"의 평균(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량 제외)

○ 유상할당(영 제13조),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(BM) 확대,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(GF)에 업체별 감축실적 반영 등은 업체별 확정적 할당량 산정이 가능한 **2단계에서 적용**

3 2단계 : 제2차 계획기간('18~'20) 전체 배출권 확정 할당('18년)

○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,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,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·보완 사항 등 **환경·에너지 정책 사항** 고려

Ⅲ. 1단계 배출권 할당

1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 기준

□ (근거) 할당계획에서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을 정하도록 규정
(법 제5조제1항제3호)

□ (선정기준) 국가 온실가스 **배출 기여도**, 배출량 **측정 가능성**, 제도 **집행 가능성**을 고려하여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

○ (배출 기여도) **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사업장**이 속해 있는 부문 및 업종으로서,

○ (측정 가능성) 온실가스 배출량 **산정·보고·검증**이 가능하고,

○ (집행 가능성) 배출권거래제 **의무 이행 주체가 명확**한 경우

□ (선정결과) 1단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은 **5개 부문, 26개 업종**으로 구분

※ **제1차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 및 업종 구분을 준용**

※ '17년 할당계획 변경('17.1.) 시 부문 및 업종 구분 조정 결과 :

1) 발전·에너지 업종은 ①발전에너지, ②집단에너지, ③산업단지 등 3개 업종으로 분리 (산업단지 업종은 산업 부문으로 구분)

2) 유리·요업 업종은 ①유리, ②요업 등 2개 업종으로 분리

※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목표관리제 적용 부문·업종 중 **'도로', '철도', '건설'** 업종은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에서 **제외**

2 1단계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

부 문	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
전환(2)	발전에너지	351~352
	집단에너지	353
산업(20)	산업단지	
	광업	05~08
	음식료품	10~12
	섬유	13~15, 205
	목재	16
	제지	17~18
	정유	19(191 제외)
	석유화학	20~22(205 제외)
	유리	231
	요업	232
	시멘트	233
	철강	241, 2431
	비철금속	242, 2432
	기계	25, 29, 313
	반도체	261
	디스플레이	2621
	전기전자	26~28(261, 2621 제외)
	자동차	30
	조선	311
	통신	61~63
건물(1)	건물	45~47, 55~99(61~63 제외)
공공・폐기물(2)	수도	36
	폐기물	37~39
수송(1)	항공	49~52

*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부문・업종 분류 개편 검토

3 1단계 배출허용총량

□ 1단계 배출허용총량은 **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수준***으로 결정

* 배출권거래제 전체 제1차 계획기간 "각 년도 사전할당량 – 할당취소량 + 추가할당량"의 평균(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량 제외)

1단계 배출허용총량 =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**538,461천톤(KAU)**

※ 1단계 배출허용총량은 **'18년 배출권 할당량**에만 적용

※ '19~'20년을 포함한 **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**은 **2단계 배출권 할당 시 확정**

4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

□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 시에는 모든 부문·업종·업체에 **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**(GF) 적용

○ 배출권거래제 전체 1단계 배출권 할당량이 **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수준이 되도록 조정계수 산정**

○ **업체별 '14~'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**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업체별 1단계 할당량 산정

업체별 1단계 할당량 = **업체별 '14~'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X 조정계수**

조정계수 = **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전체 연평균 할당량 538,461천톤(KAU) ÷ 업체별 '14~'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총 합 632,171천톤 = 약 85.18%*** *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

[2단계 배출권 할당시 업체별 1단계 배출권 할당량 조정]

◇ **1단계 배출권 할당량**은 2단계 할당량 결정 후에도 **유지・보장**

○ 2단계 할당량 결정 후 '18년 배출권 **증가 조정 필요 시** :
'18년 배출권 추가 할당

○ 2단계 할당량 결정 후 '18년 배출권 **감소 조정 필요 시** :
'18년 배출권 유지 (감소 조정은 '19~20년 할당량에서 실시)

※ 업체별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시 기준으로 고려되는
배출권 할당량은 **2단계 할당량 기준**

< 예시 >

① **2단계 '18년 할당량 > 1단계 '18년 할당량 :**
증가분을 '18년 할당량으로 추가

(단위 : 만 KAU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
1단계 할당량	1,000	-	-
2단계 할당량	1,200	1,200	1,200
연도별 배출권 보유량	**1,200** (1,000+200)	**1,200**	**1,200**

② **2단계 '18년 할당량 < 1단계 '18년 할당량 :**
1단계 '18년 할당량 유지

(단위 : 만 KAU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
1단계 할당량	1,000	-	-
2단계 할당량	800	800	800
연도별 배출권 보유량	**1,000**	**700** (800-100)	**700** (800-100)

5 1단계 부문·업종별 할당량

□ 부문·업종별 할당량은 부문·업종 내 **업체별 할당량의 단순 합**

업종별 할당량 = 해당 업종내 업체별 할당량의 총 합
부문별 할당량 = 해당 부문내 업종별 할당량의 총 합

(단위 : 천 KAU)

부문	업종	'14~'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	이행연도별 할당량		
			´18년	´19년	´20년
배출권 총수량		-	552,461	2단계 할당시 확정	
사전할당량			538,461		
예비분			14,000		
전환	발전에너지	282,627	240,732	2단계 할당시 확정	
	집단에너지	11,011	9,379		
산업	산업 단지	15,661	13,340		
	광 업	876	746		
	음·식료품	2,849	2,427		
	섬 유	3,106	2,645		
	목 재	390	332		
	제 지	7,282	6,202		
	정 유	19,831	16,891		
	석유 화학	58,022	49,421		
	유 리	3,957	3,370		
	요 업	2,531	2,155		
	시 멘 트	46,005	39,186		
	철 강	103,544	88,195		
	비철 금속	8,253	7,029		
	기 계	985	839		
	반 도 체	13,092	11,152		
	디스플레이	11,628	9,904		
	전기 전자	4,048	3,448		
	자 동 차	4,667	3,976		
	조 선	2,711	2,309		
	통 신	3,373	2,873		
건물	건 물	4,255	3,624		
수송	항 공	1,918	1,634		
공공·폐기물	수 도	738	629		
	폐 기 물	18,811	16,023		

※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및 업체별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미세 조정 가능

6 1단계 정부 예비분

□ 1단계 정부 예비분은 **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**만 반영 · 적립

1단계 정부 예비분(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) = **제1차 할당계획 시장안정화 예비분 수준** **14,000 천KAU**

[정부 예비분 개요]

◇ (정의) 추가할당 및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(법 제18조)

◇ (용도)

○ 신규진입자 및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할당(법 제8조 및 제9조)

○ 신청에 의한 추가할당 등(영 제21조)

○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상 할당(법 제23조제2항제1호) 등

[시장 안정화 조치의 요건 및 조치방안(법 제23조 및 영 제30조)]

①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

②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,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

③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

④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

Ⅳ. 2단계 배출권 할당

1 배출허용총량 등 설정 방향

□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,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,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·보완 사항 등 **환경·에너지 정책 사항**과의 정합성 고려

○ 계획기간 중 신·증설 시설에 대한 할당 방식 개선, 조기감축실적 예비분 미반영 등 **제2차 계획기간 변경 사항**을 고려하여 제1차 계획기간과는 **다른 사전할당량·정부 예비분 배분** 필요

2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방향

□ 업체별 할당방식 개선

○ (GF 할당방식)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으로 제1차 계획기간 중 **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** 부여

○ (BM 할당방식) 설비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**BM 할당방식 적용을 확대**하여 친환경 투자·산업 혁신 유도

* 제1차 계획기간('15~'17)에는 정유, 시멘트, 항공 등 3개 업종에 적용

□ 유상할당 도입

○ (대상 업종) 무상할당 기준*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유상할당

* ①무역집약도 30% 이상, ②생산비용발생도 30% 이상,
③무역집약도 10% 이상 & 생산비용발생도 5% 이상인 경우 무상할당

$$\text{무역집약도} = \frac{\text{해당업종의 연평균 수출액} + \text{해당업종의 연평균 수입액}}{\text{해당업종의 연평균 매출액} + \text{해당업종의 연평균 수입액}}$$

$$\text{생산비용발생도} = \frac{\text{해당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} \times \text{배출권 가격}}{\text{해당업종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}}$$

○ (유상할당 비율) 할당대상업체별 할당 배출권의 **100분의 3**

[2단계 배출권 할당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기본체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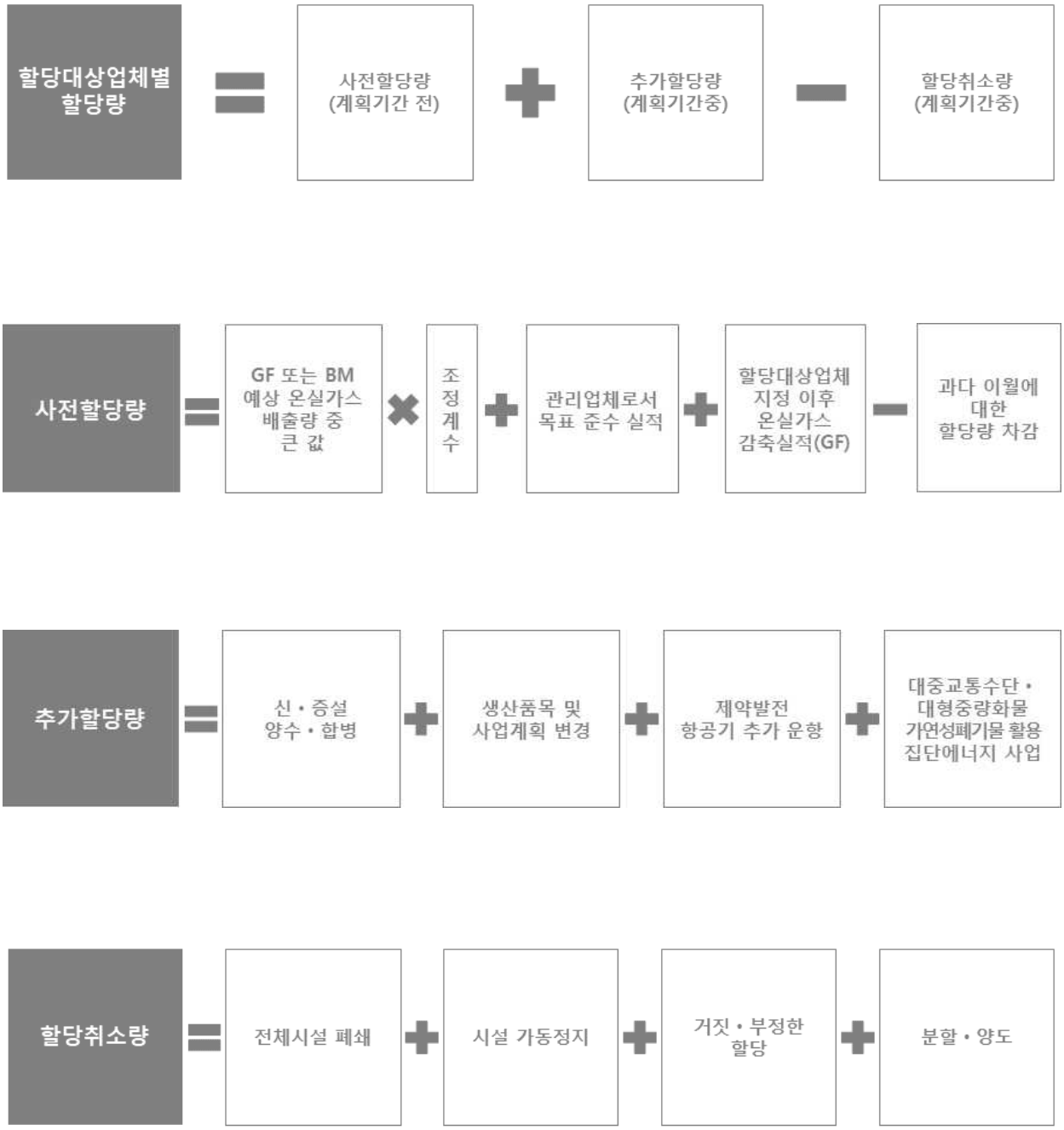

* 유상할당 업종 내 할당대상업체는 사전할당량의 97%만 무상할당

* 사전할당량 산정시 "관리업체로서 목표 준수 실적" 산정방법은

「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,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」제9조, 제11조, 별표1 참조

[할당대상업체의 배출활동과 할당량 산정 범위]

◇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」제12조에 따른 **청정개발체제 사업**(이하 "CDM 사업")으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해당 시설 배출량은 **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**하고, **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**

* 사전할당량 산정에서 제외된 CDM 사업은 CDM 사업 등록 해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신.증설 등 추가할당 대상에서 제외

* 사전할당량 산정에 포함된 배출시설은 배출권거래법령 등이 정하는 할당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,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을 통한 상쇄배출권으로의 활용 대상에서 제외

◇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」별표 3의 배출활동 중 **정유 업종의 석유정제활동***(수소제조 및 촉매재생)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**할당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**하고, **배출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**

* 해당 배출활동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미포함

※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·보완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과 연계하여 포함 가능성 검토

◇ 제1차 할당계획 할당량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, 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」제정('14.9.),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개정('14.10.)을 통해 새로이 배출량 보고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**할당량 산정 범위에 포함**하고, **배출권 제출 의무에도 포함**

① 석탄의 채굴, 처리 및 저장 등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

② 식각·증착 시설에서의 N_2O 사용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

③ 하·폐수 처리 등에 대한 배출계수 변화 등

※ 상기 지침 제·개정에 따른 할당량 산정 범위 증가는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의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고려할 필요

Ⅴ. 시장 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할당

□ (근거)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**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**를 고려하여 할당량 결정(영 제12조제1항)

□ (적용방식) 할당대상업체가 "**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% + 2만톤**"을 초과하여 배출권 이월 시,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

□ (적용시점) 차감량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**'18.8월말 시점에 결정**

○ 결정된 차감량은 **'19~20년 할당량**에서 차감하되, 2단계 할당에 따른 **'19~20년 배출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**

[차감량 산정 기준]

<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량이 **"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% + 2만톤"** 초과 시 초과량만큼 할당량에서 차감 >

* 예)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 이월 時 → 초과분 8만톤을 할당량에서 차감

◇ **(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)** 업체별 제1차 계획기간 **최종할당량**

○ 최종할당량 = 사전할당량 + 추가할당량 + 조기감축실적 + 권리의무 승계 - 할당취소량

※ 매수·매도한 할당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, 외부사업 인증실적(KOC)은 미반영

◇ **(과다 이월 판단 대상이 되는 배출권)** 업체가 보유한 **모든 배출권**

○ 보유 배출권 = 업체별 최종할당량 + 매수·매도한 할당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

※ 외부사업 인증실적 (KOC) 은 미반영

Ⅵ.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

1 유연성 메커니즘 개요

□ (개념) 할당대상업체가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*시, 배출권 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허용

*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(법 제27조)

□ (목적) 배출권 제출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**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비용 최소화**

○ (**배출권 제출 방법 유연성 보장**) 이행연도별 여유 또는 부족 배출권에 대해 **이월 및 차입**을 허용하여 미래의 생산·배출활동 등 **경영 여건**에 따라 **유동적**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대응

○ (**온실가스 감축방법 다양화**) **할당대상업체 외 온실가스 감축 투자**를 통한 실적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활용

○ (**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유도**) **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외**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대한 **감축 투자**를 유도하여,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활동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

○ (**배출권 시장 유동성 확보**) 할당대상업체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외 **다양한 방식의 감축실적이 유통**되도록 하여 배출권 시장의 **안정성** 확보

2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

□ (**이월**) 할당대상업체 및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계정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**당해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*** 또는 **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****로 **이월**(banking) 가능(법 제28조제1항)

* 제2차 계획기간의 경우 ´19년 및 ´20년이 해당
** 제3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인 ´21년이 해당

○ **계획기간 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은 없으며,**
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 가능

○ 이행연도별 배출권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(법 제32조)

*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에도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의 이월 규정 및 법 제32조의 자동 소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

□ (**차입**)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**배출권 수량이 부족**한 경우*,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** 배출권 **일부 차입**(borrowing) 가능 (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)

* 그 외 사유로는 차입 불가
*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는 제2차 및 제3차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차입이 가능하며, 제2차 이행연도는 제3차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차입 가능

○ **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의 배출권 차입은 불가**

* 제2차 계획기간 사용 목적으로 제3차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은 불가
(제2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인 ´20년에는 ´21년 할당배출권 차입이 불가)

○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**100분의 15** 이내(영 제36조제2항)

○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5 중 **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비율의 50%를 제외**한 비율 이내(영 제36조제2항)

3 상쇄(offset) 기준 및 운영

□ **(개념)** 할당대상업체 **조직경계 외부**에서 발생한 **온실가스 감축실적**(외부 감축실적)을 보유·취득한 경우,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·제출 등에 활용(법 제29조)

□ **(의의)**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감축의무 이행시 조직경계 내 자체 감축과 배출권 거래 외 감축활동 선택에 **유연성 부여**

□ **(인정 기준)** 할당대상업체 **조직경계 외부**에서 **자발적**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한정(법 제30조)

○ **타 법령**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니어야 함 (법적 추가성)

○ 일반적 경영 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**추가적 행동** 및 **조치**에 따른 감축이어야 함

○ 온실가스 배출원을 **근본적**으로 **제거·개선**하는 사업으로 생산량 감소·유지 보수 등에 의한 감축은 제외

○ **지속적**이고 **정량화**되어 **검증 가능**해야 함

○ **CDM 사업**으로 획득한 감축량은 중복활용 금지(영 제38조제3항)

○ 배출량 인증위원회(법 제34조)에서 **승인**한 **방법론**을 적용해야 함

□ **(상쇄배출권 제출 한도) 할당대상업체별**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**배출권**의 **100분의 10 이내**(영 제38조제4항)

○ 제2차 계획기간은 **국내에서 시행**하여 획득한 외부감축실적 및 **국내 기업**이 해외에서 시행*하여 획득한 외부감축실적만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(영 제40조제4항)

* 해외에서 시행한 외부감축실적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